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외국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사하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
제18조 제1항 본문 중 “공무원의 근속기간”을 “공무원의 근속기간 (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)”로 한다.

제19조 제2항 단서 중 “특별한 사유가 있는”을 “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필요한 기간”을 “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”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
제26조의 2중 “구청장에게 신고하고”를 삭제한다.

[별표 3]의 결혼·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“형제, 자매”를 각각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”로 하며 사망의 대상자란 중 “백숙부모”를 “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(안)
제10조(파견근무) ①~② (생략)		제10조(파견근무) ①~② (현행과 같음)		
③ (신설)		③ <u>외국의 정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 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 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 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</u> <u>이 경우 사하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 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</u>		
제18조(연가일수) ① 공무원의 <u>근속기간별 연 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</u>		제18조(연가일수) ① 공무원의 <u>근속기간(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 산한다)</u>		
(중략)		(중략)		
② 생략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19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생략)		제19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<u>특별한 사유가 있는</u>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.		②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 한 사유가 있는.....		
③~④ (생략)		③~④ (현행과 같음)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
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필요한 기간</u>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	
1~3. (생 략)	
(신 설)	
4. (생 략)	
제26조의2(국외여행) 공무원은 <u>휴가기간의 범위</u> 내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	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 인	7
	자 녀	1
	<u>형제자매</u>	1
회갑	본인 및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
출산	배우자(처)	1
사망	배우자	7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5
	자 녀	3
	<u>형제자매</u>	3
	<u>백숙부모</u>	3
탈상	배우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
	<u>형제자매</u>	1

비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개 정 (안)
제22조(공가)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.....
1~3. (현행과 같음)
4. <u>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</u>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26조의2(국외여행)..... <u>휴가기간의 범위</u> 내에서....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 인	7
	자 녀	1
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</u>	1
회갑	본인 및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
출산	배우자(처)	1
사망	배우자	7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5
	자 녀	3
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</u>	3
	<u>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</u>	3
탈상	배우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
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</u>	1

비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